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4선거구 이경선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이 조례안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비율 등 시·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, 노후 저층 주거지의 원활한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기존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.

○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,

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법정상한초과 용적률에서

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 
85m<sup>2</sup>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 
인수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되,  
사업성 저하로 공공재개발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 
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비율을  
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 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 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